

『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3월 11일

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조 석 회

나. 제안이유

- 공공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,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,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 -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

-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12조)
-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7조)
-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~제1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학교급식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○ 본 「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은

- 공공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,
- 최근 부각되는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기초되는 공공급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